
투자일임계약서

CSQUARED
GLOBAL ASSET MANAGEMENT

_____ (이하 “고객” 이라 한다)과 씨스퀘어자산운용(주) (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 투자자금(이하 “투자일임재산” 이라 한다)의 운용에 대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기간 동안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자일임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대상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증권
2. 자본시장법 제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3. 그 밖의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 3 조 (투자일임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투자일임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4.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제 4 조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보고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전략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투자일임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한다.

제 6 조 (투자일임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재산의 내용과 규모, 고객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임한다.
-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일임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고객이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운용인력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은 제4항 단서에 의한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 조 (업무 위탁)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한 경우 그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체결 후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위탁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우편,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④ 회사는 수탁회사의 업무위수탁계약에 따라 본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자산 평가 업무수행과 투자권 유업무를 수탁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수탁한 회사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계약의 유효기간)

① 계약의 유효기간은 [별지1]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9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고객은 서면 및 유선,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이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약등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3. 고객이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는 경우

제 10 조 (계약, 만료, 해지시의 재산형태)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 또는 해지하는 시점에서의 재산 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한다. 단, 유가증권은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한정한다.

제 11 조 (투자일임자산 및 투자실적의 평가)

- 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는 계약 체결시는 계약일 전일, 계약 만료시는 만료일, 계약해지시는 해지일 전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및 동법 시행령 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한 자산 종류별 평가방법으로 한다. 단,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평가기준일 및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 ②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투자일임자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 ③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배당락가격,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 12 조 (투자일임수수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1]에서 정한 투자일임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 ① 투자일임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기본수수료 :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합의한 계약조건상의 기본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 1회 선취로 받는 수수료이다.
 2. 성과수수료 : 투자일임서비스의 성과에 연동되어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로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간정산 및 중도해지시 실현된 투자실적을 근거로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산정한다.
- ② 투자일임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일임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회사는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낼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3. 성과수수료는 고객과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③ 고객은 제1항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 시기는 [별지1]의 수수료 지급시기에 따른다. 또한 수수료의 지급은 [별지1]에 명기된 회사의 지정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회사는 기본수수료의 입금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운용을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의 중도해지시 수수료는 [별지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는 고객이 중도해지 시 [별지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고객의 의사 등 사전 파악)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투자성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임자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투자성향 등의 변경여부를 서면,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연 1회이상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등)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지 않은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
- ④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고객의 운용지시)

고객은 리스크 관리 목적이나 전략상의 변화 등을 이유로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회사에 대면·서면·E-mail 등의 방법으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 15 조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 ①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기간 동안 분기1회 이상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서면 제출하고 설명해야 한다. 단,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 ② 제1항의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투자일임계약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의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수령한 경우 그 시기 및 금액
 5. 투자일임자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7.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시기, 실적, 잔액)
 8. 그 밖의 관계법령상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6 조 (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내용과 관리사항,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

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

③ 회사는 고객이 개설한 투자일임재산 계좌의 운용관련 자료를 해당 증권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 17 조 (통지 의무)

①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영업점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1]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또는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8 조 (운용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9 조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 조 제2 항」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 또는 증권의 보관, 위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 또는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 또는 증권의 대여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 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6.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자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다만 인수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자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증권의 보관, 위탁을 받는 행위
8. 투자일임자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자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9. 투자일임자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0.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자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투자일임자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12.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 20 조 (회사가 위임 받을 수 없는 행위)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
 1. 투자일임자산을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투자일임자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3.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가 정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련법상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 (이해상충방지 체계)

- ①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투자일임자산에 관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 ② 회사가 투자일임자산 중 특정 자산을 고유자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시기, 거래실적 및 잔액을 투자일임보고서 제출 시 고객에게 통보한다.
- ③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규정으로 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관리 체계 등을 마련하여 규정을 준수하며, 주기적으로 점검보고서를 작성한다.

제 22 조 (청약의 철회)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 단, 고객이 [별지2]에서 투자일임자산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② 고객은 계약의 철회 표시를 위하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회사에 발송하여야 하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 ③ 회사는 고객의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23 조 (위법계약이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4 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

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5 조 (과세신고)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과세관련 신고(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고객이 해당 세무당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고객의 운용지시 포함)로 인한 손실

②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및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27 조 (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8 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9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

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고객과 회사는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고객 :

성 명(상호) : (서명/인)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회사 :

상 호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송센터빌딩 8층 (07327)
사업자등록번호 : 119-88-00388
대 표 이 사 : 최 중 혁 (인)

[별지 1]

투자일임 세부 계약서

(계약의 내용)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_____년 _____월 _____일 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 까지	
계약금액	금 _____ 원정 (₩ _____)	
수수료	혼합보수형	기본수수료(선취) : 계약금액의 _____ %
		성과수수료(후취) : _____
		중도해지수수료 : _____
		① 중도해지시 선취한 기본수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함 ② 계약금액 추가시 기본수수료 : 추가계약금액 x 기본수수료율 x 잔존일수 / 365(윤년인 경우 366) ③ 성과수수료 : 고객과 별도로 합의에 따라 정함 ④ 중도해지수수료 : 고객과 별도로 합의에 따라 정함
거래증권회사 지점 및 계좌번호	거래증권사 : _____ 증권 (지점)	계좌 번호 :
	담당자(관리자) 성명: _____	연락처 :
고객에 대한 통지 장소	주 소 :	연락처 :
	E-mail :	
	※ 투자일임보고서 교부방법 :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투자일임담당자		
수수료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	기본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성과수수료는 계약만기일·중도해지일 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수수료 입금계좌 : KB국민은행 867737-04-007815 씨스퀘어자산운용(주)	
그 밖의 사항		

일임자산 즉시 운용에 대한 동의서

1. 본 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으로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은 투자일임자산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 / 비동의) 합니다.
3. 본 동의서에 동의하실 경우 고객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고객 :

성 명 : (서명/인)

[별첨]

1. 제22조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반환금액에 연 6%의 이자율을 일할 계산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